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주 의	-	-	-

【제 목】 재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 근 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예산 편성지침을 마련, 이를 근거로 예산안을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체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집행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또한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27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예산은 예산 과목별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 교부 조건에도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마련한 「201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및 사무 집기류는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 재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컴퓨터 등 자산 취득성 비품구입 비용을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추진비나 국내·외 출장 여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항목을 일반

수용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① 카메라, 컴퓨터, 보존처리 장비, 가구 등 비품을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17건/36,114천원)
- ② 사업 관계자 업무협의 식대 등 간담 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14년 63건 /8,676천원)
- ③ 임직원의 공무 국외 출장시 국외여비 항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14년 2건 13,195천원)

또한 소규모 발굴조사 사업의 '학술자문회의 간담회' 등 50건(7,567천원)의 업무 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주무부처 등의 예산 변경이나 전용 승인 없이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당초 예산 계획에 미편성 되어 있는 '한·인 수교 40주년 기념행사 국외출장' 등 7건(51,758천원)의 국외 출장 경비를 국외여비 항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타 항목에서 임의로 집행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향후 재단 예산 편성 지침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개 선	-	-	

【제 목】 한국의집 예술단 출연료 지급에 관한 사항

1.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매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굿GOOD 보러가자” 전국 순회공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굿GOOD 보러가자”의 주요 공연 참가자는 중요무형문화재 가무악 예능 보유자 및 보존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단 및 경연대회 수상팀 등이 공연에 출연하고 있으며, 공연 출연료는 재단의 「예산집행지침」 <별첨 4> 출연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상기 재단의 「예산집행지침」은 외부 출연자(단체)에 대한 출연료로 내부 단체의 공연 출연에 대해서는 재단 공연 출연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행사 지역, 인원, 종목 및 소요 지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연별로 출연료 지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굿GOOD 보러가자” 공연에 참가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단의 최근 2년간(2012~2013년) 출연료 지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연전시팀에서는 한국의 집 고객서비스팀(예술단 관리부서)과 소요 경비에 대한 별도의 협의 및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매회 4,000천원씩 총 56,000천원을 출연료로 지급하였고, 한국의 집에서는 동 공연에 참가한 예술단 비용(출연료, 경비)으로 매회 최고 2,968천원에서 최저 860천원을 지출하여 지급받은 사례비 대비 1,032천원에서 3,14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동 지출액은 일반관리비 등 간접 비용은 제외된 금액임)

2.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예술단이 공연 참여 시에는 별도의 출연료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	-	-	주 의(1명)

【제 목】 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1. 근 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산회계규정」 제80조(하자보수의 점검 등)에 따르면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하자보수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 기록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3회에 걸쳐 시설공사(기계, 전기 등 포함)가 이루어졌으며 동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총계 (건)	하자검사 미 실시		일회성 공사 (하자검사 불필요)	하자검사기간 미도래	기타 (시설관리 이관)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정기검사 대체)			
33건	7건	9건	3건	13건	1건

- 공사 완료 후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공사 : 7건
-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공사의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정기 시설물 검사로 대체한 공사 : 9건

상기 내용과 같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하자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 미실시 사례가 일부 있었음

또한,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중 2013년도 전수회관 지하4층 예비실 환경개선 공사를 확인해 본 결과, 종합준비실 및 예능연습실 내 창고 결레받이 코킹이 파손되어 있는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미실시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조속히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 하자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	-	-	주 의(2명)

【제 목】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미실시

1.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라 매년 임직원에게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2013.11.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2011년 이후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건강진단 대상 직원에 대한 미수검 현황 점검결과 아래와 같이 미수검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1년 검진대상자 : 256명, 미수검자 15명(미수검 사유자 11명 제외)
- 2012년 검진대상자 : 238명, 미수검자 45명(미수검 사유자 7명 제외)

2012년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 45명에 대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2013.12.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위반으로 과태료 2,250천원 부과예정 통보 받고 1,800천원을 자진납부(20% 할인)한 사실이 있는 등 기관의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에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2014	-	환 수	23,559	-

【제 목】 인쇄물 발간 대금 과다 지급

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산회계규정」 제70조(계약의 감독)·제71조(계약의 검사)·제77조(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감독담당은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고, 검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등 4건 13권(248,360천원)을 발간하며, 발주한 면수보다 최종 발간 면수가 총 1,533면 적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게 납품된 것으로 검사·검수 후 계약 대금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인쇄비를 재산정한 결과 23,559천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연번	발간책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과업면수 (A)	발간면수 (B)	차이 (B-A)	과지금액 (천원)
1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1,경기2,충남1,충남2)	○○○○인쇄사	77,000	2,687	2,100	587	10,230
2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1,경기2,충남1,충남2)	○○문화사	119,000	3,760	3,288	372	9,079
3	고양원흥동·삼송동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주)○○M&B	8,250	176	146	30	703
4	의정부 민락 발굴조사 보고서	○○○○인쇄사	44,110	1,796	1,352	444	3,520
합계	4건	3개사	248,360	8,419	6,886	1,533	23,559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등 4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계변경 감액 조치 없이 인쇄업체((주)○○○○인쇄사 등 3개사)에게 과다 지급된 인쇄비 23,559천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통 보	-	-	-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⑧항 및 제⑨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의거 제안서 상의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용역” 등 3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기관 여건에 맞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각각의 사업에 따라 평가위원 수가 일정치 않고(3~12명), “2011년 소규모발굴조사 보고서 제작” 등 11건은 내부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재단개발상품 스카프 5종 및 손수건 4종 제작 용역”을 평가하며 “디자인 및 제작능력”에 50점을 배점하는 등 평가항목 별 최대 배점한도인 30점을 초과하여 배점한 사례가 있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하시고, 향후 제안서 평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	-	-	주 의(2명)

【제 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근 거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예정가격의 비치)에 따라 계약 전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함시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물리탐사를 통한 라오스 흥남시다 유적의 지층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초금액(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입찰한 결과 면세사업자인 ○○○○○○연구원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최종 계약시 기초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5,454만원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그 금액 이하로 계약하여야 하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연구원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5,700만원에 계약·지출하여 최소 246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개 선	-	-	-

【제 목】 문화상품 재고 관리에 관한 사항

1. 근 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상품 관리 지침」 제16조(업무)에 따르면 상품관리자가 상품의 보관·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상품의 폐기)는 상품의 폐기 시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해체·폐기조서에는 그 해체 또는 폐기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감소품 처리)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과정 중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상품관리자가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감소품 처리하며, 도난상품의 경우 매장관리자가 ‘도난 상품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총괄상품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13년말 기준으로 80년대 구입한 회화류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2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이 있으나, 이중 일부 관리 미흡으로 품질 저하(변색·녹발생 등)가 발생하여 폐기 처분(18종 1,647개)한 사례가 있으며,

‘12년·‘13년말을 기준으로 재고조사 후 2회에 걸쳐 3,411개(21백만원 상당)상품의 폐기 시에 수리 등 손실 최소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고, 상품 폐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아울러, 도난 상품에 대한 감소품 처리는 '도난 상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상품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여야 하나, 12년·13년 재고조사 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7,372개(27백만원 상당)를 감소품 처리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향후 재고상품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고, 「문화상품 관리지침」에 문화상품 폐기 및 감소품 처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발굴제도과	2014	개 선	-	-	

【제 목】 국고지원 소규모 발굴지원사업 환수 금액 산정 불합리

1. 근 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2-27호/2012.3.2.)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에 따라 건설 시행자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회수되는 비용은 발굴조사 완료 후 정산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지원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 규모와 다르게 국비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건설행위를 한 3건에 대하여 발굴조사에 소요된 국비지원 금액을 회수하면서,

회수 금액은 시굴·발굴에 소요된 직접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회수 금액으로 산정하여 국비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시·발굴 조사에 참여한 보호재단 직원은 월정 급여를 지급하고 국비지원 발굴조사 산출내역서에도 직접경비만 계상하여 허가를 받고 민원인과 계약한다는 사유로 직접인건비 약 8,890천원을 제외한 직접경비 약 11,652천원만 회수하였음.

회수일자	지원대상	총 조사비용	회수금액 (직접경비)	미반영금액 (직접인건비)	회수사유
2012.12.13	하남시 하사창동 ○○○ 시굴조사	8,036,075원	4,971,950원	3,064,125원	지원 규모 초과 등
2012.11.22	경주시 석장동 ○ ○○ 시굴조사	4,778,864원	1,904,170원	2,874,694원	지원 규모 초과 등
2013.7.25	부여군 동남리 ○ ○○ 시굴조사	7,728,266원	4,776,840원	2,951,426원	지원 규모 초과 등
	계	20,543,205원	11,652,960원	8,890,245원	

3. 조치할 사항

발굴제도과장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의 국비회수 금액 산정시 발굴조사에 소요된 인건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NO.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주 의	-	-	-

【제 목】 인쇄물 제작 사전 발주 및 계약 관계서류 미비치

1. 근 거

「2014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부서의 사전발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산회계규정」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2012년~2014년 6월 기간 중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재단 홍보 인쇄물 19건(132,910천원)을 제작하면서, 계약부서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업체(○○○○○ 등 6개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발주하였고,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계약 관련 규정 준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NO.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2014	주 의	-	-	-

【제 목】 발굴조사원 발굴현장 근무 부적정

1. 근 거

발굴조사 허가를 받을 때 첨부한 발굴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발굴조사원은 발굴조사 현장에 매일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사원이 개인사정 등으로 발굴현장을 이탈할 경우 다른 조사원 등이 발굴현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12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505건)를 받아 시행한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참여 조사원의 근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발굴조사 기간 동안 발굴조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조사원이 연차 휴가,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3일 이상 발굴조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조사원급으로 대체하지 않아 조사원이 없는 상태에서 총 13건(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현재 2건)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향후 발굴조사 중 조사원이 없는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굴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NO.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발굴제도과	2014	시 정	-	-	-

【제 목】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 등 부적정

1. 근 거

조사기관은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3.46호/2013.4.30.개정) 제7조에 따라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를 수록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 문화재를 관리·활용할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지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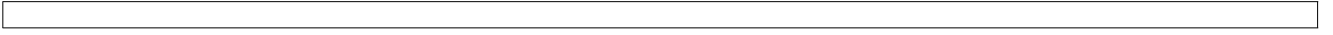
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발굴조사 완료 후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때에는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한 국가귀속 대상문화재도 함께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13년에 제출한 발굴조사 보고서(55건)상에 수록되어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3,842점에 대하여 보존처리 진행 등의 사유로 2014.6.30. 현재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문화재보호재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 후 국가귀속 대상문화재(66건, 13,839점)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였는데도 2014.6.30. 현재까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위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여부결정에 대한 확정이 없어 2014.6월 현재까지 국가귀속문화재를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신고한 국가귀속 대상문화재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발굴제도과장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국가귀속 신청한 문화재에 대하여 조속히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NO.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개 선	-	-	-

【제 목】 발굴조사용 임차 차량 관리 등 미흡

1. 근거

「문화재조사연구단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를 작성·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매년 국고를 지원받아 소규모 발굴조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매년 17~18대(대당 월 약 75만원 상당 소요)를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음

- ① 2014.1월~6월까지 월별 차량 운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임차 차량 17대 중 2대~7대는 월별로 10일 이내만 운행하고 있는 등 임차 차량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발굴조사 현장 갯수 등을 감안하여 임차 차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임차차량 월별 운행 현황 >

월 별	임차 차량수	1~5일 운행	6~10일 운행	11~15일 운행	16일 이상 운행
1월	16대	-	4대	-	12대
2월	17대	3대	3대	3대	8대
3월	17대	2대	1대	6대	8대
4월	17대	-	5대	4대	8대
5월	17대	-	2대	5대	10대
6월	17대	2대	5대	6대	4대
계		7대	20대	24대	50대

② 임차 차량 운전자는 「문화재조사연구단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2013.8.12. 개정)」 제12조(운전자의 의무)에 따라 “차량 운행 및 정비일지”를 운행일 당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나, 동일 장소 운행기록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국고지원 소규모 발굴조사 사업의 임차차량은 발굴현장 갯수 등을 감안하여 임차 차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시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임차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NO.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개 선	-	-	-

【제 목】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보존처리 약품 관리 미흡

1.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6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에 따르면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 종사자는 이러한 안전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지적 내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염산 등 유독성 약품(17종)을 사용하고 있음

동 연구단은 연구 인원이 적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에 해당되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유독성 약품 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유독성 약품 등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